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KFD Briq BBQBg 6/3lb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목탄화.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The Clorox Company		
주소	1221 Broadway Oakland, CA, 94612 USA		
이메일	-		
전화번호	1-510-271-7000		
팩스	-		
긴급전화번호	응급 의료 전화에 대한: 1-800-446-1014 교통 비상 사태, 전화 CHEMTREC: 1-800-424-9300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환경 유해성	수생 환경에 위해함 구분 만성 3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없음.
o 신호어	없음.
o 유해·위험 문구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 것.
대용	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
저장	접촉 금지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목탄화		16291-96-6	KE-05459	60-100
석회암		1317-65-3	KE-21996	7-13
증류유 (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		64742-47-8	KE-12550	5-10
보고수준보다 낮은 기타성분				0.01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헹굴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입을 씻어 낼 것.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일반적인 조치사항

일반적인 지원 방식을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부적절한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₂).

고압 살수시 화재가 확산되므로 고압 살수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말 것.

화재 발생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예방조치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방법

화재 발생시 공기호흡기와 전신 보호복을 사용할 것.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여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 것. 하수/수생 환경에 누출된 경우 지역 해당기관에 문의할 것.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가 누설 또는 누출을 방지할 것. 물을 오염시키지 말 것.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누출물을 모으시오. 배수구, 하수도, 지하실 또는 밀폐공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적절히 환기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 것. 배수구로 쏟아 버리지 말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완전히 밀폐된 원래 용기에 저장할 것.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노출기준

구성성분	종류	값
석회암 (CAS 1317-65-3)	TWA	10 mg/m ³
증류유 (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 (CAS 64742-47-8)	TWA	200 mg/m ³
64742-47-8)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노출 지침

한국 OELs: 피부 호칭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CAS 64742-47-8)

Skin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피부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일반적으로 시간당 10회 환기가 되는)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환기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 눈 보호

접촉할 것 같은 경우엔 옆에 차폐물이 달린 보안경을 권장함.

○ 손 보호

필요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위생대책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고체.
형태	고체.
색	흑색
나. 냄새	무취.
다. 냄새 억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 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자료없음.
폭발 한계 - 상한 (%)	자료없음.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용해도	
용해도(물)	물에 불용성.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을/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마.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제품은 통상의 사용, 저장 및 운송조건에서는 안정하고 비반응성임.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물질은 안정함.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얼, 불꽃 및 스파크. 피해야 할 물질과의 접촉.
다. 피해야 할 물질	산. 불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알려진 유해한 분해산물이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흡입으로 인한 악영향은 예상되지 않음.
○ 경구	섭취 위험이 낫다고 봄.
○ 눈	직접적인 눈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피부	피부 접촉으로 인한 악영향이 예상되지 않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증류유 (석유), 수소로 처리된 가벼운 (CAS 64742-47-8)		
급성		
경구		
LD50	주	5000 mg/kg
경II/		
LD50	토끼	2000 mg/kg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장기적인 피부 접촉은 일시적인 염증을 유발함.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직접적인 눈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이 제품은 피부민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간주됨.	
◦ 발암성	자료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제품 또는 어떤 성분으로 0.1%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유전독성이나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	
◦ 생식 독성	본 제품은 생식 또는 발달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이 제품의 분해성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없음.

자료없음.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봉고,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수거하여 재생하거나 밀봉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지역에 서 폐기할 것. 이 물질이 하수구/수로로 유입되지 않게 할 것. 화학물질이나 사용한 용기로 연못, 수로 또는 도량을 오염시키지 말 것.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할 때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위해 등급

-

부수적 위험

-

라. 운기등급

해당없음.

마. 환경유해성

아니오.

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해당없음.

안전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여객기 및 화물기	해당없음.
항공 화물 전용	해당없음.
국제해상위험물 (IMDG)	
가. 유엔번호	해당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위해 등급	해당없음.
부수적 위험	-
라. 옹기등급	해당없음.
마. 환경유해성	
해양오염물질	아니오.
EmS	해당없음.
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	해당없음.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해당없음.
일반적인 정보	IMDG 규제 해양오염물질.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CAS 64742-47-8)

Limestone (CAS 1317-65-3)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준화학물질 목록 (ECL)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하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취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준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준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나. 최초 작성일자

2014년 6월 10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정보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